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동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1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의자 : 김동훈, 이경숙, 한근수,
정현미, 이정애, 원주영,
박은경

1. 제안 이유

이·미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이·미용인의 양성과 발굴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예산지원 규정 (안 제4조~제5조)
- 다. 지도·감독 및 홍보, 포상 규정 (안 제6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 가. 「공중위생관리법」
- 나. 「지방자치법」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이·미용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학교·학원·기관·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협회 및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근거한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미용 산업 지원 예산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2026년 이·미용업소 대상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예산	지원내용
사무 관리비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물품 지원	6,000	- 이·미용업소 물품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집합위생 교육비 지원	7,000	- 집합위생교육 개최 및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대한미용사회 보조금 지원)

※ 기제정된 「남양주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29. 제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

- 그 밖에 사업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산출이 어려움.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위생과장 김수현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